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8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 5. 31.

4. 회부일자 : 2018. 6. 11.

Ⅱ. 개정이유

O 2018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와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1. 초등학교 신설
 - O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어울초등학교(은평구 통일로 640)
- 2. 유치원 신설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양재유치원 (서초구 바우뫼로 18길 14)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 3.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4. 기 타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나. 입법예고(2018. 5. 1. ~ 5. 21.)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86호로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에 우리 위원회 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1개교와 단설 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는데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 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어울초 신설의 건

- O 어울초 신설의 건은 은평구 통일로 640에 25학급(특수1학급 포함) 832명 규모의 초등학교를 2018년 9월 1일자로 개교하고자하는 것1)입니다.
- 어울초는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가칭)녹원초등학교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과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²⁾ 2018년 9월 1일자 개교에 앞서 동 개정조례안에 학교설립을 반영 하는데 있어 별도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당초 예산편성 당시 가칭)어울초였던 동 초등학교는 서부교육 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녹원초'로 결정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녹원(綠園)'이 한자어로 어

¹⁾ 최초 개교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11(1)학급 규모에 204명 수용

²⁾ 제261회 정례회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2015.7.10.) 가칭)녹원초 토지매입 비 20,676,422천원, 건설비 14,559,429천원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린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발음 또한 쉽지 않고 어감이 '노곤' 과 비슷하여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나 눔'(1안) 또는 '어울'(2안)로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이 '어울초'로 의견을 다시 제시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명을 '어울초'로 최종 결정하였는바, 학교명의 변경에 있어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다만 어울초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이 추진되었으나, 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일정의 지연과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일정의 지연(2018년 10월부터 순차적) 등의 사유로 개교시기가 2018년 9월로 변경되었는바,

개교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어울초는 개교 이후에도 주변 공동주택의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학교명 심의 결과

가칭 학교명	검토 명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	님의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재심의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녹원초	어울초	녹원초	2018.3.15.	나눔초 /어울초	2018.4.18	어울초	2018.5.1

[표-2] 학교 설립 공정률 현황

(기준: 2018. 5.30.)

학교명	위치	개교예정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어울초	은평구 통일로 640	2018. 9. 1.	2016.12.29.	2018.8.14.	76%

나. 양재유치원 신설의 건

- 다음으로 단설유치원 신설의 건은 2018년 9월 1일자로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초등학교에 각각 7학급(특수학급 1포함) 132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양재초가 속한 강남서초 7지역은 2018학년도 유치원 유아수용률이 38.1%에 불과하여 서울 지역 평균 유아수용률 43.4%보다 낮은 반면 공립 유치원을 희망하는 취학수요는 높은 상황인바,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확대라는 측면에서 동 단설유치원 설립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3] 단설유치원 유아수용전망

	권역		유아교육시설 정원			유아	취학수요(명)	
학교명	동	취원대상 유아수(명)	설립유형별	시설수 (개)	정원(명)	수용률 (%)	공립 희망	공립 과부족
양재유치원	서초1~4동 양재1동	4,181	공립유치원	5	412	38.1	2,151	△1,270
			사립유치원	8	1,183			
			계	12	1,595			
-			공립유치원	2.3	177	43.4	1,354	△1,177
			사립유치원	6.8	836			
			계	9.1	1,013			

- 한편 양재유치원은 금년 1월 3일부터 공사착공이 실시되었으며, 착 공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41%에 불과한바, 당초 계획대로 금년 9월 1일 개원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일정 단축 등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사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한편, 각종 유해물질에 민감한 유아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 제품의 사용 및 새집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는 대

책들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 공정률 현황

(기준: 2018. 5.30.)

학교명	위치	개교예정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서울양재유치원	서초구 바우뫼로 18	2018. 9. 1	2018.1.3	2018.8	41%

□ 이상으로「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자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